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4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2.

발 의 자 : 서지영 · 김대식 · 박성훈
이종배 · 이현승 · 이인선
김성원 · 구자근 · 박수민
이진숙 · 조지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·고시하고,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·위생, 안전,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 및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「관광진흥법」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되었는데,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,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

숙박업과 규제 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(안 제9조제27호).

법률 제 호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7호 중 “숙박업 및”을 “숙박업,”으로, “제외한다)”를 “제외한다) 및 같은 항 제3호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과 규모, 용도, 기간 및 학습 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 업은 <u>제외한다</u>) 28. ~ 32.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외한다) 및 같은 항 제3호</u> <u>라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</u> <u>민박업</u> 28. ~ 32. (현행과 같음)
---	---